

광주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나79417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광주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나79417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5. 23 선고 2022가단54531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준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종명

변론 종결 2024. 3. 14.

판결 선고 2024. 4. 18.

제1심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5. 23. 선고 2022가단54531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 사이에 제1심 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5. 14. 체결된 매매계약을 45,322,88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5,322,8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한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양섭

판사박은주

판사변종두